

'25.11월 전문가 자문단 주요 상담사례

1.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· 유보금 설정의 적법성 여부

상담요청

기성금의 90%만 지급하고, 10%를 공사 완료 후 지급하도록 한 유보금약정이 2025.5.1.부로 시행된 부당특약 고시 및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?

□ 상담내용

-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·준공금을 수령한 경우,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. 기성금은 일부 유보 불가,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,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을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.
- 기성금의 일부(10%)를 유보하는 약정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, 2025.5.1. 시행된 부당특약 고시와 무관하게 위법 판단이 가능합니다. 수급사업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이면 효력 인정이 어렵습니다.
- 다만, 계약자유의 원칙상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거나 업종 특성상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성이 있고, 노무비 미지급 대비 목적은 직접지급 제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2. 보행로 조성공사 내 정보통신공사의 부대공사 인정 여부

상담요청

보행로 조성공사(총 공사비 약6억원), 지반조성·포장공사(약87%), 정보통신공사(약13%)인 공사에서, 발주처가 지정한 토목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?

□ 상담내용

-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의 '부대공사'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.
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, 정보통신공사는 '건설공사'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. 국토부 고시(부대공사 판단기준)는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가 모두 '건설공사'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.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, 주된 토목공사의 종된 '부대공사'로 인정될수 없습니다.(대전고법 2022.9.1.선고 등 다수 판결례 동일)
-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토목업체가 정보통신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공사업 범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.
 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는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.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(동법 제74조), 이러한 무면허 시공을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발주자 내지 원도급사 역시 관리·감독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
- 다만, 같은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미한 정보통신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아닌 자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.
 - 특히, 통신구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'정보통신'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 또는

토목건축공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는 허용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 귀 질의사례의 정보통신공사가 경미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해당협회 포함)에 자세히 문의를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